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4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이훈기·김승원·박지혜
이기현·이주희·이재강
황명선·박지원·허종식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그 희생자나 유족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2년(2023년 9월 22일 ~ 2025년 9월 21일) 이내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임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진실규명사건 발굴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등).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로,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 ----- ----- 조사하여야 한다.